

2017년 중국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개정 및 시사점

1995년에 최초로 공표되어 중국 내 외국인 투자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왔던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 한 차례 또 개정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6월28일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개정안>(이하 “2017년도 지도목록”)을 공표하였는데, 2015년도 개정 이후 2년만의 개정으로 지금까지의 개정주기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이는 현 중국 정부의 대외개방정책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7년도 지도목록에서는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업종에 한해서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은 간단한 신고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함)를 최초로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 제한 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외국인 투자의 길목을 훨씬 넓혔습니다. 2017년도 지도목록은 2017년 7월28일부터 시행되는데, 이하에서 2015년도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이하 “2015년도 지도목록”)과 비교할 때 어떤 점이 수정되었고 그에 따른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산업별 개방 정책의 조정

2017년도 지도목록에서는 외상투자 제한 업종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지도목록에서는 총 93개 업종에서 외상투자가 제한되었는데, 2017년도 지도목록에서는 이 중 30개가 감소하여 총 63개 업종(제한류 35개, 금지류 28개)에 대해서만 외상투자가 제한됩니다. 중국 내 출판, 음반, 영화 등 문화 분야는 여전히 금지 분야로 분류되었고, 완성차 분야의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50%)도 개정 과정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기존의 제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번에 외상 투자가 개방된 업종은 크게 서비스 분야, 제조업 분야, 채광업 분야입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도로여객운수, 신용조사 및 등급평가서비스, 회계감사, 대형농산물도매시장 건설 및 경영 등 업종이 외상 투자 허용업종으로 분류되었고, 제조업에서는 철로교통운수설비제조, 자동차 전자 BUS 인터넷기술 및 전동조력 전향시스템 전자 제어기 개발 및 제조, 신에너지 자동차 에너지형 배터리 제조, 오토바이 제조, 해양공정장비(모듈 포함)의 제조 및 수리, 선박 저·중속디젤엔진 및 크랭크축 제조, 식용유지가공 등이 외상 투자 허용 업종에 편입되었습니다.

2.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최초 도입

2015년도 지도목록은 업종을 크게 권장류, 제한류, 금지류로 분류하고, 외국인투자 권장류 업종 중 일부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분비율제한 등 일정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에 반해 2017년도 지도목록에서는 업종을 크게 권장류와

네거티브리스트로 분류하고, 권장류 업종 중에서 외국인 지분비율제한 등 일정한 제한이 있는 업종과 제한류 및 금지류에 속하는 업종을 통합하여 모두 네거티브리스트에 분류하였습니다. 유의할 점은 외국인투자 권장류 산업 중 외국인 지분비율 등 제한이 있는 일부 업종은 권장류에 속하는 동시에 네거티브리스트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산업정책적으로 외국인투자 권장류에 적용되는 혜택(가령 수입설비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는 동시에 네거티브리스트 업종에 적용되는 제한성 정책(가령 네거티브리스트에 속하는 업종을 수행하는 외상투자회사는 승인제도가 적용됨)을 적용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지도목록 하에서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업종이 권장류, 제한류, 금지류 중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를 단편적으로 파악하면 되었지만, 2017년도 지도목록이 시행된 이후에는 권장류에 속하는 업종인지 여부와 네거티브리스트에 속하는 업종인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외국인투자 인허가 제도 간소화

2017년도 지도목록의 시행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과 관련한 인허가는 물론 외국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절차도 상당히 간소화 됩니다(외국인전략투자자로서 중국 내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투자 업종이나 인수합병 대상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이 네거티브리스트에 속하지 않을 경우, 기존과 같이 승인 제도를 거칠 필요 없이 신고 제도를 거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업종이 네거티브리스트에 속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승인 제도를 거쳐야 하지만,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 온 일부 민감한 업종을 제외하고 한국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은 대부분 권장류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 인허가 제도가 상당히 간소화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중국 내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그에 따른 거래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권장류 업종의 안정적 유지

2017년도 지도목록 중 권장류 업종은 모두 348개 항목인데, 아래 표와 같이 2015년도 지도목록과 비교하여 6개 항목이 증가하고, 7개 항목이 삭제되었으며, 35개 항목이 수정되었습니다. 중국의 혁신 산업발전 전략에 입각하여 하이테크 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구 분	해당 업종
증가된 항목	스마트 응급의학구조설비제조, 수문 검측 센서제조, VR, AR설비 연구개발 및 제조, 3D프린트설비 주요부품연구개발 및 제조, 수소충전소 건설·경영, 도시주차시설건설·경영
삭제된 항목	철로교통운수설비제조, 해양공정장비(모듈포함)의 제조 및 수리, 선박 저·중속 디젤엔진 및 크랭크축 제조, 소형가스터빈 제조, 정격출력 350MW 이상인 대형 펌프 스토리지 설비세트 제조, 회계, 감사, 종합수리허브시설의 건설·경영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최용원 파트너변호사

TEL. +86 10 8447 5343

E-Mail. ywchoi@shinkim.com

정천주 선임외국변호사(중국)

TEL. +82 2 316 4201

E-Mail. tszheng@shinkim.com

원중재 파트너변호사

TEL. +86 10 8447 5756

E-Mail. jjwon@shinkim.co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의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